

노동부, 이주 노동자 “이직 위약금” 관련 우즈벡 정부에 개선 요구

1. 관련 기사

- 8.8.(토) 프레시안, 인신매매방지법 걸린 ‘우즈벡 인력 송출’...성평등부, 노동·법무부에 개선 요청

2. 설명 내용

- 고용노동부는 최근 언론 기사 등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들이 자국 정부(대외노동청)와 사업장 변경이나 이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입국한다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음
-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, 이는 고용허가제 취지에 맞지 않는 부당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자 인신매매 등의 소지가 있는 매우 부당한 조치라고 보고,
 - 우즈벡 대사관 및 대외노동청 한국 주재 사무소 등에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,
 - 지난 8.6(목) 기획조정실장-우즈벡 고용빈곤퇴치부 차관 면담(우즈벡 대사관 관계자도 참석) 시에도 해당 사안의 부당함을 엄중 제기하면서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한 바 있음
- * 다만 고용허가제 우즈벡 담당 부처는 '24.10월부터 고용빈곤퇴치부에서 총리실 산하 대외노동청으로 이관된 바, 우즈벡 차관은 해당 내용을 대외노동청에 명확히 전달 하겠다고 하였음
- 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우즈벡 정부(대외노동청)에 공식 문서를 발송하여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며,
 - 우즈벡측의 시정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임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	책임자	과 장	한은숙 (044-202-7157)
		담당자	사무관	강정안 (044-202-7158)

